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2024. 12. 24.(화) 11:00 < 12.24.(화) 석간 > 배포 2024. 12. 23.(월)

「자율운항선박법」 시행령 제정

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안덕근, 이하 '산업부')와 해양수산부(장관 강도형, 이하 '해수부)는 「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(이하 '자율운항선박법')」 시행(2025.1.3.)에 앞서, 법률 시행령안이 12월 24일(화)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.

자율운항선박은 인공지능(AI) 등 첨단기술을 운항시스템에 접목하여 선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개입을 최소화하는 선박으로서, 2032년 기준 세계시장 규모가 1,805억 달러*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망 신산업이다. 이에, 관련 핵심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통한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하여 자율운항선박 관련 종합적인 정책 추진 근거를 담은 「자율운항선박법」이 올해 1월 제정되었다.

* (출처) Acute Market Reports, 2022

「자율운항선박법」은 산업부와 해수부가 1년여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세계 최초로 제정한 법률이다. 이번 시행령 마련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, 자율운항선박의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절차 및 내용, 성능 실증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사항 구체화, 해상물류체계 구축 및 연구개발 사업 등과 운항해역 평가 기준·방법, 실증 승인 절차 등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가 담겼다.

동 법이 시행되면 별도 지정된 운항해역 안에서는 안전성 평가를 거친 경우, 일반 선박에 적용되던 「선박안전법」,「선박직원법」 등 관련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여 우리 해운·조선기업 및 연구기관이 다양한 자율운항 선박 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.

양 부처는 내년 초 법 시행 이후 정책위원회(양 부처 장관 공동위원장) 발족을 시작으로 기본계획 수립 추진, 실증 지원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. 또한 국내 기술 개발 및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해사기구(IMO)의 자율운항선박 국제규정(MASS Code) 논의 등 국제표준화를 주도할 계획이다. 아울러, 한-미 조선·해운협력 과정에서 자율운항선박 논의 가능성이 있어, 양국 간 공동 연구개발(R&D) 등 조선·해운산업 상생 발전을 모색하고, 한-유럽연합(EU) 등 주요 국가의 자율운항선박 국제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.

담당 부서	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	책임자	과 장	김의중 (044-203-4330)
		담당자	사무관	조문규 (044-203-4333)
담당 부서	해양수산부 스마트해운물류팀	책임자	팀 장	송준석 (044-200-6205)
		담당자	사무관	노소영 (044-200-6201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